

의안번호	제19호
의결 년월일	2026. 3. 19. (제335회)

금산군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출자	금산군수
제출년월일	2026. 3. 5.

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19호

제출년월일 : 2026. 3. 5.

제 출 자 : 금 산 군 수

1. 제정이유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에 따라 공공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책임성과 윤리성을 갖춘 행정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금산군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금산군 인공지능 정책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추진사업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사.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인공지능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전자정부법」 제4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3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 다. 기 타
 -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 해당없음(기획예산과-262)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예산과-23066)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가족정책과-54849)
 - 입법예고(2026. 1. 9. ~ 2026. 1. 29.) : 제출의견 없음

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기술의 활용과 기반 조성을 통해 금산군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공지능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공지능의 개발·도입 및 활용 과정에서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 등의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리체계) 인공지능기술 관련 업무는 인공지능 업무 담당 부서의장이 총괄한다. 다만, 인공지능기술의 구체적인 실행 및 적용은 사업 주관 부서의장이 인공지능 업무 담당 부서의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6조(금산군 인공지능 기본계획) ① 군수는 금산군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3.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 및 군민 대상 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금산군 인공지능 정책 자문단 운영) ① 군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추진 및 관련 정책의 효율적 수립·운영을 위하여 금산군 인공지능 정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인공지능, 데이터, 정보보호, 행정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군수는 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추진사업) ① 군수는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시행
2. 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
3. 군민의 인공지능기술 이해 향상 및 이용 교육
4. 인공지능 관련 군민 및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직원 참여 경진대회 및 전시회·행사 등 개최
5.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재 양성 지원
6.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자격증 취득 지원) ① 군수는 군 소속 직원이 인공지능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응시료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인공지능 정책 홍보)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 활용 정책에 대한 물품, 콘텐츠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2조(보안대책 마련) 군수는 인공지능형 시스템 및 서비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밀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주요한 자료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방지를 위해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개인 또는 소속기관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및 관련 정책 참여 실적이 우수한 경우
2.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기여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 인공지능 시책사업 추진
- 나. 관련조문 : 안 제8조(추진사업), 안 제10조(자격증 취득 지원)

2. 비용추계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추계의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5년)으로 함
 -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컨설팅과 역량강화 교육의 지원

나. 추계 결과(산출기초 등)

사 업 명	산출기초	예산액(천원)
계		190,000
인공지능 전환(AI) 컨설팅	100,000,000원 × 1식	100,000
인공지능 활용 교육 추진	10,000,000원 × 1식 20,000,000원 × 4식	90,000

다. 재원조달방안

- 균비 100%

3. 작성자

기획전략국 기획예산과장 박 정 미(☎ 041-750-400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세 출		11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90,000
AI전환 컨설팅		100,000					100,000
AI 활용 교육		10,000	20,000	20,000	20,000	20,000	90,000
재원 조달		11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9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자체 수입	소 계	11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90,000
	지방세	11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90,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 계 법 령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2.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효율성의 향상
3.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의 확보
4.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5.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6.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②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은 상호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기관등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 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공급
 - 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생산 공정
 - 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 체계의 구축·운영
 - 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 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핵물질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

- 바.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얼굴·지문·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의 분석·활용
 - 사.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 아.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 자.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의사결정
 - 차.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 카.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
5.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6.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8. “이용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9. “영향받는 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10.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11.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12. “학습용데이터”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 ② 영향받는 자는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및 원리 등에 대하여 기술적·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경제·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